

증권담보용자핵심(요약)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증권담보용자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증권 담보용자	■ 증권담보용자란 고객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예탁증권(매도되었거나 환매 청구된 전자등록주식 등 또는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용자를 말합니다. · 일반담보용자는 주식매수 또는 출금을 위한 현금 필요시 위탁 계좌에 보유한 주식, 펀드를 담보로 일정비율만큼 대출하는 서비스입니다. · 소액자동담보용자는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처럼 출금(자동화기기 출금, 이체출금 및 자동이체, 지로/CMS, 예약이체출금 등) 시 현금(유동성)이 단기적으로 부족한 경우 위탁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펀드를 담보로 자동으로 대출 실행하여 출금처리되며 입금 시 자동으로 상환되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 플러스론은 일반담보용자 불가종목 중 당사가 정한 주식을 담보로 별도심사없이 소액 대출하는 서비스 입니다. · 매도증권담보용자란 매도되었거나 환매 청구된 전자등록주식 등 또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금전의 용자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용거래와의 차이> 신용거래는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는 신용용자를, 매도에 대하여는 신용 대주를 받아 수도결제하는 매매 거래이므로 보유한 증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증권담보용자와 거래 방법이 다릅니다.
---	---

■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사항 [민원 우려로 숙지 필요사항]



- ① 연체 시 대출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만기 미상환 시 담보 증권이 임의처분 되며, 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증권담보용자금에 대한 담보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종목별 담보유지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신용공여금액 및 해외주식담보용자 잔고 보유에 따라 가산 적용)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 담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④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담보의 추가 납부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요구한 기일까지 추가로 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한 수량만큼 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① 인지세 징수 기준은 고객실명번호 기준으로 약정금액 합산하여 약정금액에 따라 차등 징수 됩니다.



- ② 인지세 부족 시 기타대여금(미수금)으로 징수하여 약정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일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인지세가 기타대여금으로 징수되었을 경우 해당금액에 대해 일부변제가 되면 당일 약정해지는 불가합니다.
- ③ 인지세법 상 인지세의 징구 시기는 약정등록시점이므로, 대출의 실행과 관계없이 약정을 등록할때 인지세가 징구됩니다. (최종 등록 실행시 징구된 인지세는 대출 약정 감액 또는 해지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 ④ 용자기간은 90일이며, 연장조건 충족 시 90일 단위로 연장가능합니다. 담보유지 비율 충족 계좌이며 용자가능종목인 경우 가능합니다.



- ① 고객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영업점 • 고객센터 (TEL : 1588-6800) •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②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담보융자거래설명서

《 목 차 》

1. 증권담보융자 개요 -----	4
2. 증권담보융자 한도 -----	6
3. 증권담보융자 기간 -----	7
4. 증권담보융자 신청방법 -----	7
5. 증권담보융자 이자 -----	8
6. 증권담보융자 대상종목 -----	10
7. 증권담보융자 제한 -----	11
8. 증권담보융자 상환 -----	12
9. 증권담보융자 담보관리 -----	13
10. 해외주식담보융자 -----	17
11. 기타주요사항 -----	20

. 본 내용은 증권담보융자 약관의 일반 담보융자 및 매도증권담보융자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내용과 고객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증권담보융자 약정, 실행 및 연체 등 으로 인해 신용평가기관의 고객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본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권담보용자 제도의 개요

1) 증권담보용자의 개념

증권담보용자란 고객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예탁증권(매도되었거나 환매 청구된 전자등록주식 등 또는 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용자를 말하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일반담보용자 및 플러스론」란 회사에 거래계좌를 가진 고객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금전의 용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매도증권담보용자」란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전자등록주식 등 또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금전의 용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연금형 일반담보용자」란 일반담보용자로서 개인연금저축계좌를 가진 고객에게 연금저축계좌 내 예탁증권을 담보로 금전의 용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증권담보용자 거래계좌의 설정

- ① 고객은 「일반담보용자, 소액자동담보용자, 플러스론」, 「매도증권담보용자」(이하 “증권담보용자약정”이라 한다)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 고객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단, 연금형 일반담보용자는 고객 명의의 연금저축계좌와 연금저축 CMA 계좌를 보유하여야 함), 회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에 의하여 증권담보용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거래서비스 약정이 체결된 고객에 한하여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문서를 통하여 증권담보용자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② 증권담보용자약정은 약정의 해지 전까지는 유효하며, 증권담보용자금의 상환 후에도 계속하여 증권담보용자약정에 따른 증권담보용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은 증권담보용자에 대한 한도의 증액 등 중요한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권담보용자약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 ④ 증권담보용자약정 해지는 신청서에 의하여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문서 또는 녹취 가능한 전화에 의하여 고객의 계약해지 의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고객은 증권담보용자약정 신청시 인지세법상에 정한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인지세액은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⑥ 고객은 증권담보용자약정 신청 시 출금가능금액(CMA 계좌의 RP 평가금액 포함, 단 평가 가능한 RP 는 개별상품(위탁매매 포함)매매가 가능한 CMA 계좌에서 자동 매입하는 RP 에 한정 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한 출금요청에 대해 보유 예탁증권을 담보로 자동으로 금전의 용자를 하는 ‘소액자동담보용자’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액자동담보용자 신청 가능 계좌: 위탁계좌, 개별상품(위탁매매 포함)매매가 가능한 CMA 계좌

※ 소액자동담보용자 범위

- 출금, 이체출금, 자동이체, 지로/CMS, 예약이체출금 등의 경우 적용됩니다.
- HTS, WTS, MTS 등 고객용 매체의 출금신청 화면에서는 소액자동담보용자 가능금액을 포함/미포함 한 출금가능금액 모두 확인이 가능하나 타업권, 타사의 ATM 기에서는 소액자동담보용자 가능금액을 포함한 출금가능금액만 조회 가능합니다.

※ 소액자동담보용자 관리: 일반담보용자로서 관리되며 용자기간, 이자율, 이자징수방법, 만기관리 등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약정한도 제외)

⑦ 고객은 증권담보용자약정 신청 시 수도결제를 통해 현금미수금 발생시 보유 예탁증권을 담보로 자동으로 금전의 용자를 하는 ‘자동미수상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미수상환서비스 신청 가능 계좌: 위탁계좌, 개별상품(위탁매매 포함)매매가 가능한 CMA 계좌

※ 자동미수상환서비스 대상 금액

- 당일 수도결제로 발생한 현금미수금의 전액 변제가 가능한 금액만큼 미수발생당일 19시경 자동으로 용자합니다.
- 만약 계좌의 용자가가능한도금액이 전액 변제 가능금액 미만이면 용자가가능한도금액 내에서 용자하여 미수금을 일부 변제합니다.

※ 자동미수상환서비스 관리

1) 담보용자실행은 매도증권담보용자, 일반담보용자 순서로 합니다.

약정 구분		용자실행
매도증권 담보용자	일반담보용자	
약정	미약정	매도담보용자만 실행
미약정	약정	일반담보용자만 실행
약정	약정	매도담보용자 실행 후 증권담보용자 실행

2) 매도증권담보용자 및 일반담보용자 실행 시 각각의 담보용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증권담보용자의 한도

- 1) 증권담보용자의 약정체결 및 총한도는 고객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단위로 이루어지며, 총한도 범위내에서 계좌별 한도를 고객이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일반담보용자 및 플러스론 」및「매도증권담보용자」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1 인당 최고 한도 범위와 고객이 계좌단위로 사전에 별도로 정한 증권담보용자 한도 내에서 용자를 실행합니다.
- 3) 계좌별로 한도의 증액 및 감액 정정이 가능합니다.

단, 고객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단위로 합산한 총한도가 증액될 경우에는 증권담보용자 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 4) 고객이 증권담보용자 약정을 해지한 경우에 회사는 인지세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신용공여유형별 증권담보용자 약정한도

구 분	기본형/매매형
일반담보용자	개인/법인 15억원
소액자동담보용자	개인 5천만원
플러스론	개인 4천만원
매도증권담보용자	개인/법인 30억원

※ 소액자동담보용자 및 플러스론 용자 한도는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별도 적용됨

6) 용자 가능 금액

가) 일반담보용자(단, 플러스론 은 주식만 해당)

상기'2)'의 증권담보용자 약정한도 내에서 담보대상이 주식인 경우에는 용자신청일 기준가격의 50%~70%, 채권인 경우에는 용자신청일 전일 민간시가평가금액의 70%(회사채는 50%),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60%(주식형,혼합형) 혹은 70%(채권형/MMF),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인 경우에는 전일민간시가평가금액의 50%(원금비보장형), 혹은 60%(원금보장형) 용자가 가능합니다.

단, 연금형 일반담보용자의 경우 연금저축계좌내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60% 용자가 가능합니다.

단, 사모형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기준가격의 40%~60% 용자가 가능합니다.

단, 담보용자 신규신청 및 만기연장 시 종목별 한도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객별 합산 관리)

구분	A군	B군	C군	D군	E군
종목군 대출/만기연장 한도	15억	15억	10억	2억	1억

※ 용자 종목군 확인 화면: m.Stock 주식현재가, 카이로스[0918] 대출가능종목조회

나) 매도증권담보용자

주식 매도자금용자	집합투자증권 매도자금용자
· 국내주식 매도금액의 98% · 해외주식 매도금액의 95%	① 환매기준가 확정 전: 기준금액의 50% ② 환매기준가 확정 후 · 채권형 수익증권, MMF: 기준금액의 97% · 채권형 수익증권 및 MMF 이외의 수익증권 : 기준금액의 90% ※ 기준금액: 환매예약좌수에 대하여 당일기준가(환매기준가 확정시 해당 기준가)로 평가한 금액(환매수수료, 세금 차감됨)

※ 상기 증권담보용자 용자한도 및 용자금액은 고객의 신용도, 시장상황 및 회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증권담보용자의 용자기간

1) 일반담보용자의 용자기간

90일(단, 연금형은 365일), 만기연장 가능 조건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90일 단위로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 만기연장 가능 조건: 고객의 별도 신청(유선, 온라인, 영업점 내방) 이 있는 경우 연장 시점에 최소 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이고, 해당 종목이 증권담보용자 가능 종목
(단, 플러스론 은 회사가 확인한 고객 개인신용점수가 700 점 이상인 경우 가능)

2) 매도증권담보용자의 용자기간

용자신청일로부터 매도체결(환매신청)종목의 수도결제일까지로 합니다.

따라서, 1 건의 매도증권담보용자라 하더라도 담보금액의 종류(전일 또는 당일 매도)에 따라 상환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증권담보용자의 신청방법

1) 일반담보용자

- 가) 융자신청은 자동지정 또는 특정종목지정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며, 자동지정 및 복수의 종목지정의 경우에는 A 군→B 군→C 군→D 군→E 군 순으로 동일 종목군 내 평가금액이 큰 종목부터 먼저 담보로 지정됩니다.
- 나) 자동지정 및 특정종목지정의 경우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종목은 50 종목이며, 담보 주식 50 종목이 넘는 경우에는 융자신청을 50 종목 단위로 반복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다) 증권담보융자약정을 체결할 때 '소액자동담보융자'신청을 한 고객의 경우 출금, 이체출금, 자동이체, 지로/CMS, 예약이체출금 등의 출금요청으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담보는 보유 유가증권 중 A 군→B 군→C 군→D 군→E 군 순으로 동일 종목군 내 평가금액이 큰 종목부터 먼저 담보로 지정됩니다.
- 라) 증권담보융자약정을 체결할 때 '자동미수상환 서비스'신청을 한 고객의 경우 해당 계좌의 수도결제로 현금미수가 발생하면 발생일 19:00 경 신청서, 전자문서 작성 없이 자동으로 매도증권담보융자 및 일반담보융자가 신청될 수 있습니다.

2) 매도증권담보융자

- 가) 매도증권 담보융자 한도 내에서 고객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나) 융자신청에 의해 수도결제일이 가장 빠르게 도래하는 매도체결분부터 융자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5. 증권담보융자의 이자 및 연체이자

- 1) 융자이자의 적용은 융자건별로 계좌 관리점, 이용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단, 매도증권담보융자의 경우에는 일괄 7.5%, 연금형 일반담보융자의 경우에는 3.2%를 적용합니다.
- 2) 융자이자의 기준금리는 증권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3) 융자이자의 정기징수일은 다음월 첫영업일이며, 상환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상환일에 이자를 징수합니다.
- 4) 융자금이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그 다음 영업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융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하며, 융자이자의 연체 시 융자이자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도 징수됩니다. 단, 회사의 사정에 의해 연체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 증권담보융자 상품별 최대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일반담보융자, 해외담보융자, 소액자동담보융자, 플러스론 융자는 연 9.9%로 적용됩니다.

② 연계 CMA 약정된 연금형 담보용자는 연 6.2%적용하며, 연계 CMA 미약정된 연금형 담보용자는 연 9.9%로 적용됩니다.

나) 기본 연체이자율은 연체 발생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의 이용기간별 증권담보용자 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연 3.0%)를 합산한 이자율로 하며, 최대 연체이자율 이내로 적용됩니다.

다) 우대 고정이자율 적용 계좌는 우대 고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연 3.0%)를 합산한 이자율과 최대연체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로 적용됩니다.

라) 우대 할인이자율 적용 계좌는 최대연체이자율에서 차주에게 적용 중인 우대 할인이자율을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 미상환용자금 및 이자미납금액 변제 시점에 차주의 적용 연체이자율로 미변제 연체금액 전액에 대해 소급하여 연체이자금액을 산정합니다.

마) 융자금 상환 시 이자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융자금 + 이자
- 만기미상환용자금 + 연체이자

※ 매도상환으로 인한 제비용 발생 시 제비용(매매수수료, 세금 등)을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합니다.

5) 이자율 계산은 한편넣기 방식으로 적용합니다.(융자일 불산입, 상환일 산입)

단, 윤년의 경우 해당일수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6) 이자율은 기준금리,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등 직·간접 비용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가격정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7) 고객의 기여도,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우대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이자율은 등록일로부터 6 개월간 적용되며, 적용기간 종료 후 융자실행 및 융자연장 시 기본이자율로 환원됩니다.

【증권담보용자 이자율: 체차법 적용】

구분	1~30일	31~60일	61~90일	91~180일	180일 초과
영업점 계좌	연 6.4% (기준금리 2.61%+ 가산금리 3.79%)	연 6.8% (기준금리 2.61%+ 가산금리 4.19%)	연 7.2% (기준금리 2.61%+ 가산금리 4.59%)	연 7.6% (기준금리 2.61%+ 가산금리 4.99%)	연 7.8% (기준금리 2.61%+ 가산금리 5.19%)

영업점 외 계좌	연 8.9% (기준금리 2.61%+가산금리 6.29%)
----------------	-----------------------------------

* 영업점 외 계좌는 다이렉트 계좌임(은행, 비대면)

* 영업점계좌는 체차법 적용, 영업점 외계좌는 일괄 단일법 적용

6. 증권담보용자 거래 대상종목

1) 일반담보용자

■ 국내 주식: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으로 다음의 경우는 용자 가능 대상종목에서 제외 (HTS 대출가능종목 조회화면에서 확인 가능)

가) 한국거래소 조치 및 지정 종목

-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종목
- 한국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한 종목
-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한 종목

나) 신규상장(등록)후 1개월이 미경과한 종목 및 당사가 기업공개한 경우 3개월 미경과한 종목(단, 기업분할 등의 사유 발생시 고객은 회사와 협의하여 신규상장종목 제한조건 예외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

다) 그밖에 유동성, 재무제표, 주가의 급등락, 불공정 거래(시세조종, 공금횡령)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담보용자 불가능으로 선정한 종목

■ 채권

- 국채, 지방채 및 복수민간평가사의 평가등급에서 AA+등급이상 채권 중 당사가 선정한 채권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가) ELB/DLB (파생결합사채) : 당사가 발행한 ELB/DLB

나) ELS/DLS(파생결합증권)

: 당사가 별도로 선정한 ELS 및 당사가 별도로 선정한 DLS

(단, 신용연계 DLS, 외화 ELS, 글로벌 ELS 중 주식지급형 ELS는 불가,

ELS/DLS는 자동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최종조기상환 평가일 이후부터는 담보용자불가)

■ 집합투자증권

- 당사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 중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집합투자증권

(HTS 대출가능종목 조회화면에서 확인 가능)

단, 펀드 상환예정일이 융자일자보다 작은 경우 담보융자 불가

2) 플러스론: 주식 중 당사가 정한 종목

3) 매도증권담보융자: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중 당사가 정한 종목

7. 증권담보융자의 제한

1) 융자신청금액은 최소 1 만원이상, 1 만원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증권담보융자 신청 제한

① 신용거래 제한정보자, 기타부실거래자, 압류계좌, 담보유지비율미달계좌, 미수유가증권 발생계좌인 경우 융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② 담보융자신청수량이 이미 질권설정, 선물대용증권지정, 보호예수지정, 위탁계좌의 증거금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융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연금형 일반담보융자의 연금저축 연계계좌(CMA 계좌) 상품유형은 연금형 CMA 유형만 가능합니다.

4) 기타

①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고객 신용점수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고객의 융자 약정 및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플러스론 은 회사가 확인한 개인신용점수가 700 점 미만인 경우 융자 약정 및 신청이 제한됨)

② 실시간 담보관리에 애로가 있는 고객(휴대폰 미등록자) 및 사고발생 고객(피싱 발생계좌)은 융자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관계법령 및 금융당국의 조치, 담보융자 관련 회사 총한도 초과 및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융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증권담보융자의 상환

1) 현금상환

- 융자 만기일 이전에도 일부 및 전액 현금상환이 가능하며, 융자일/융자종목/융자건별로 1 건씩 상환해야 합니다.

- ‘소액자동담보융자’ 로 융자받은 융자금 및 융자이자 는 고객의 신청 없이 매일 22:00경 현금상환 가능금액 내에서 융자일 빠른 순으로 자동으로 현금상환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종목으로 동일 용자일에 일반담보용자와 소액자동담보용자 용자금이 모두 있는 경우, 현금상환 신청시 소액자동담보용자 용자금을 우선하여 상환합니다.
- 현금상환은 영업일 01:30~23:00까지 가능하며, 현금상환취소는 상환당일에 한해 취소 후 해당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충족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연금형 일반담보용자의 경우 현금상환취소 불가)
- 현금 상환 후 종목별 고객 기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현금 상환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매도상환

- 담보증권의 매도(환매예약)로 인하여 수도결제일에 도래하는 매도결제대금(환매대금) 으로 용자금 및 용자이자 등이 자동으로 상환되며, 일부상환도 가능합니다.
- 동일 종목으로 동일 용자일에 일반담보용자와 소액자동담보용자 용자금이 모두 있는 경우, 수도결제일에 도래하는 매도결제대금으로 소액자동담보용자 용자금을 우선하여 상환합니다.
- 연금형 일반담보용자는 매도상환시 담보용자신청일자 빠른순으로 자동 상환됩니다.
(용자건별 선택상환 불가)

3) 만기상환(단, 연금형 일반담보용자 제외)

- 만기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상환시 그 다음 영업일 오전 장개시전에 임의상환(반대매매)을 처리합니다.

※ 회사는 상환기일(만기일) 다음영업일에 고객계좌에 현금(CMA 계좌의 RP 평가금액 포함, 단 평가 가능한 RP 는 개별상품(위탁매매 포함)매매가 가능한 CMA 계좌에서 자동 매입하는 RP 에 한정 한다. 이하 같다.)이 예탁되어 있거나 매도결제대금이 입금될 경우에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자동으로 충당합니다. (단, 매도결제대금에 의한 자동상환은 상환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회사의 임의처분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간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금액기준방식을 적용하여 현금상환과 매도상환을 처리합니다.

4) 해지상환 (연금형 일반담보용자)

- 개인연금저축계좌((구)개인연금)의 연금형 일반담보용자의 경우 만기 미상환 또는 반대매매 발생시 해지상환으로 처리합니다.

- 연금이 개시된 개인연금저축계좌((구)개인연금)에서 연금이 지급된 기간이 5 년미만일 때 해지상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익에 대하여 세금(이자소득세)이 징수되며, 이자, 세금(이자소득세), 융자금액을 상환 후 남은 잔액이 지급이 됩니다.
- 해지상환 시 잔액이 부족할 경우 미상환융자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현금상환하시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9. 증권담보유자의 담보 관리

1) 담보유지비율은 신용공여유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로 합니다.

최소담보유지비율은 융자받은 종목별로 담보유지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융자 금액 가중합산하여 계좌의 적용담보유지비율이 산출되며, 미달 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단, 신용공여금액 30 억원 초과 시 10%p 가산, 50 억원 초과 시 20%p 가산 적용됩니다. 추가로 해외주식담보유자 잔고 보유 시 10%p 가산 적용됩니다.)

■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구분	A군	B군	C군	D군	E군	F군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140%	140%	140%	140%	140%	140%

※ 단, F 군 중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 종목인 경우는 160% 적용됩니다.

※ 융자 종목군 확인 화면: m.Stock 주식현재가, 카이로스[0918] 대출가능종목조회

※ A~E 군 종목별 기본 한도 초과 이용 시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담보유지비율이 적용됩니다.

※ 담보비율 평가방법 예시: 종목별 융자금 C 군 '가' 종목 5억원, E 군 '나' 종목

1억원,

F 군 '다' 종목 1억원 보유 가정 시

융자받은 종목군	융자금	종목별 기본한도	종목별 담보비율	종목 필요담보금액	비 고
C 군 '가' 종목	5 억원	10 억원	140%	7 억원	
E 군 '나' 종목	1 억원	1 억원	140%	1.4 억원	
F 군 '다' 종목	1 억원	없음	160%	1.6 억원	관리종목 지정
합 계	7억원			10 억원	

● 종목필요담보금액 = 융자금 * 종목별 담보비율

● 계좌 적용담보유지비율 = 종목필요담보금액 / 융자금

☞ 10 억원 / 7 억원 = 142.86%

☞ 계좌 적용담보유지비율: 142%

(적용 기준은 16시경 기준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및 신용공여금액 합계액으로 산정하고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일 적용된 이후 용자받은 종목이 변경되면 익일 16시경에 계좌적용담보유지비율이 재계산되어 일별로 적용됩니다.)

● 담보부족 및 반대매매 대상 금액 산출 기준은 계좌 적용담보유지비율로 산정됩니다.

2) 담보유지비율은 증권담보용자/신용거래용자/대주 등 복수의 신용공여를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3)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취득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나)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

다) 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ELS)에 한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산정한 민간시가평가금액

라)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함)

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투자회사의 주식: 기준가격

바) 기업어음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을 제외한 공모파생결합증권/사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이 있을 경우 그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산정한 기준가격

사) 가)~바) 사항에 불구하고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평가

※ 다만, 매도증권담보용자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매도가격 또는 용자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자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함)을 담보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담보평가의 특례

가)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배정기준일 전전일에 매수하여 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함)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중에는 당해 권리도 담보로 봅니다.

- ① 무상증자시 신주 : 기준일 전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 ②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 기준일 전일부터 유상청약 종료일까지
- ③ 유상증자시 청약한 신주 : 유상 청약종료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 ④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청약종료일 또는 배정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 ⑤ 합병,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 :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나) ‘가)’에 따른 권리의 평가(권리수량 * 적용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권리락일 ~ 기준일	~ 청약일	~ 환불일	~ 입고일
무상증자 시	권리수량	소유수량* 주당배정비율	배정수량		
	적용단가	당일종가(단, 당일종가 없으면 기준가)			
유상증자 시	권리수량	소유수량* 주당배정비율	배정작업수 량	청약수량 (원청약수량+ 초과청약수량	최종배정수량 (원청약수량 배정분+ 초과청약수량배정분)
	적용단가	(당일종가 - 발행가액) 단, 당일종가 없으면 기준가		원배정수량: 당일 종가 초과청약수량: 발행가액	당일 종가
공모주/ 전환사채 청약시	권리수량			청약수량	배정수량
	적용단가			공모가(발행가)	
실권주 청약시	권리수량			청약수량	배정수량
	적용단가			청약단가	당일종가

* 합병,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의 권리평가는 합병 및 회사분할사유 또는 합병 및 회사분할 후의 상장여부 등을 회사가 검토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추가담보로 납부가능한 상장주권은 대용증권, 투자유의/투자경고/투자위험 지정종목으로 한정합니다.

- 5) 회사가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6) 회사는 추가담보에 대한 징구의 경우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합니다.
- (단, 연금형 일반담보용자 제외)
- 7)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자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결제일 가정산 예수금 및 결제일 가정산 평가금액)를 감안하여 계산하며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8) 회사는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이 미달한 경우 고객이 사전에 신청한 내용증명우편 또는 전화 등 (전화 방법은 자동음성안내 전화, 유선전화 등으로 합니다) 으로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고, 고객이 신용공여유형별로 정해진 추가담보제공기간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회사가 임의처분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분합니다. 반대매매를 통한 임의상환 정리를 하는 경우, 종목군별로 차등하게 임의상환수량을 산정합니다. (A,B,C 군은 전일종가의 15%, D,E,F 군은 전일종가의 20%로 할인하여 산정하며, 해당 종목군은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합니다.)
- 9) 회사는 고객의 연금형 일반담보용자의 담보유지비율이 미달일 경우, 담보부족금액과 해지가산세 등을 포함한 예상환매대금만큼 임의상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환매대금 계산에 있어 기준가 변동, 해지가산세 납부 등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임의상환금액(환매대금)이 실제 상환필요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구 분	기본형 및 매매형
담보유지비율	140%
추가담보제공기간 (D 일 16 시경 기산)	요구일 포함 2 일 (D+1 일 까지)
임의상환 정리 (반대 매매일)	D+2 일

※ ‘D’는 요구일(추가담보제공 요구일)을 의미함

* 담보유지비율이 상향된 고객들은 신용유형에 관계없이 상향된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는 수준까지 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

※ 상기 담보의 관리는 고객의 신용도, 시장상황 및 회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담보제공기간 및 반대매매일에 대한 비교 사례

구 분	미달 기준	D 일	D+1 일	D+2 일
기본형 및 매매형	140% 미만	장 마감, 추가담보제공 요구일	추가담보 제공기간	임의상환 (반대매매)

10)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11) 연속담보부족횟수가 1 일 이상인 계좌는 100% 현금 주문만 가능합니다.

10. 해외주식담보용자 신청 시 적용사항

1) 해외주식담보용자의 개념

증권담보용자 이용 시 일반담보용자 및 매도증권담보용자에 해외주식 포함 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주식담보용자 신청 시 일반담보용자 및 매도증권담보용자와의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담보용자의 한도

가) 해외주식담보용자 신청 시 고객별 용자 한도는 일반담보용자와 매도증권담보용자에 각각 합산하여 관리됩니다.

나) 일반담보용자의 증권담보용자 약정한도 내에서 담보대상이 해외주식인 경우에는 용자신청일 기준가격의 50%~70% 용자가 가능합니다.

다) 매도증권담보유자: 해외주식 매도금액의 95% (단, 해외주식의 경우 매수결제일 이후 매도 체결에 대하여 매도증권담보유자가 가능하며, 매수결제처리 전 매도체결에 대한 매도증권담보유자 불가하며 거래국가별 매도(환매)대금 결제일이 상이함)

3) 증권담보유자 거래 대상종목

가) 일반담보유자

해외 주식: 회사에서 거래 가능한 주식으로 사전에 안내한 종목

(HTS 대출가능종목 조회화면에서 확인 가능)

단, 다음의 경우는 용자가능 대상종목에서 제외

- 해당 국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예고한 종목

- 그밖에 유동성, 재무제표, 주가의 급등락, 불공정 거래(시세조종, 공금횡령)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담보유자 불가능으로 선정한 종목

나) 매도증권담보유자: 해외주식 중 당사가 정한 종목

4) 증권담보유자의 상환

가) 현금상환, 매도상환, 만기상환 시 환율변동 등으로 상환예정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외화예수금은 원화로 환전한 후 현금상환 할 수 있습니다.

5) 증권담보유자의 최소담보유지비율

해외주식담보유자 잔고 보유 시 신용공여 금액별 차등 담보유지비율에 10%p 상향하여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은 1 회차 16:00 경, 2 회차 22:00 경 기준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및 신용공여금액 합계액으로 산정하고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6) 담보평가의 특례

가)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한 증권(체결은 되었으나 아직 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에 권리발생이 확정된 경우, 당해 권리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담보로 평가합니다.

① 무상증자 시 신주: 권리락일 부터 당사 입고일까지

② 유상증자 시 신주(신주인수권 有): 권리락일부터 신주인수권 입고일까지

③ 유상증자 시 신주(신주인수권 無): 권리락일부터 당사 입고일까지

④ 회사합병, 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 효력발생일부터 당사 입고일까지

나) '가)'에 따른 권리의 평가(권리수량 * 적용단가)는 각 국가 및 회사별로 권리 유형 및 발생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 국내 기준과 같이 배당은 기본적으로 권리를 평가하지 않으나, 해외주식의 성향 상 배당형태 및 배당금액의 크기에 따라 일부 배당에 대해 권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권리의 평가는 각 국가 및 회사별로 권리 유형 및 발생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고객의 담보유지비율(해외주식담보유자 포함)이 미달한 경우 고객이 사전에 신청한 전화, Email 등으로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고 고객이 신용공여유형별로 정해진 추가담보제공기간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담보유자 약정 고객의 경우 16:00 경, 22:00 경 각각 1 회씩 추가담보 납부 통보를 하며, 22:00 경 통보는 Email 로 합니다. (Email 미등록 계좌는 해외주식담보유자 약정이 제한 됩니다)

8)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회사가 임의 처분하는 경우 국가별 상황에 맞게 임의상환수량과 임의처분(반대매매) 가격을 결정합니다.

중국주식은 전일종가의 -10%, 일본/싱가포르/홍콩/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기타국가 주식은 전일종가의 -15%로 할인하여 산정합니다.

반대매매는 각 거래소 정규장 장개시 후 1 분(일본의 경우 9:31)부터 순차적으로 발주되며, 당사 및 해외 거래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구분	상환수량 기준가격	처분가격
일본	전일종가 * 85%	현재가 대비 -1%
싱가포르	전일종가 * 85%	현재가 대비 -25 tick
홍콩	전일종가 * 85%	현재가 대비 -5 tick
중국	전일종가 * 90%	현재가 대비 -2%
영국	전일종가 * 85%	현재가 대비 -3%
독일	전일종가 * 85%	현재가 대비 -3%
미국	전일종가 * 85%	현재가 대비 -3%
캐나다	전일종가 * 85%	현재가 대비 -3%

※ 상기 담보의 관리는 고객의 신용도, 해외시장 상황 및 회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주요사항

□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안내

- 1)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계약서류수령일 또는 계약서 체결일(계약서류제공 받지 아니한 경우)부터 14 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2)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36 조에 따라 고객이 청약 철회 서면을 우편, 팩스로 발송한 경우 그 사실을 전화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전자우편 제외)의 방법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4) 대출 약정 시 징구한 인지세와 대출이자 등 청약 철회 시에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 5) 반대매매 등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6)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에 기재된 연체된 이자율을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안내

- 1)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종류: 신용거래, 증권담보용자거래
-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4)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5)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 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1) 용자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2) 계약 해지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 거래설명서는 관계법규의 개정, 시장 상황 및 영업환경의 변화, 회사의 사정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가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 공지함으로써 고객이 인지한 것으로 봅니다.

본 거래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증권담보용자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 권익보호 사항

1. [위법계약해지]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 조에 따라 당사가 적합성 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료열람요구]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 제공
3.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6800) 통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고객 불편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안내사항

1.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판매직원 안내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미래에셋증권 _____

◆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인 또는 서명)

◆ 판매직원 연락처 :

※ 본 계약서류(설명서 등)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